

B 11 -> 1
SAe.a.4

7·27 정전협정 43주년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토론회

일 시 : 1995년 7월 26일(수) 오후 2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주 최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 708- 4324)

순서

◎ 발 제 ◎

- 동북아정세의 새로운 전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

전정환 국방대학원 국제정치학 교수

-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최규엽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 평화군축의 내용과 실현방도

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논 찬 ◎

남궁진 국회의무통일위원회 위원

제성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삼성 한림대 정치외교학과교수

◎ 사 회 ◎

이목회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정책위원장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전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

전정환 국방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목 차

1. 1990년대 동북아 정세 개관
2.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
3.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의 개념
4. 남북한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5.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보장방안
↳ 주변 국가의 긴류

1. 1990년대 동북아정세 개관

1980년대 말 이후 국제정세가 “지각변동”으로 표현될만큼 역사적인 변화를 보여왔지만 동북아시아에서도 여러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 지역에서도 냉전의 종식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종식은 유럽에서처럼 극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완만하고 제한적인 것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종식현상과 냉전의 지속현상을 구분하여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종식현상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련 및 몽고가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민주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발전시키고 있고 중국이 아직까지 정치개혁을 거부하면서 자국의 체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하고 개혁,개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들 국가들이 모두 국제공산혁명노선을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북한 하나만을 예외로 하고 국가들간의 이념대립과 이념으로 인한 대립, 적대관계가 종식된 것이다.

둘째, 남북한관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화해, 공존, 우호, 협력관계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혁명적인 변화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간의 관계는 동반자관계로 표현될만큼 발전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상호간의 각종 교류, 협력관계와 우호관계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 중국 및 몽고간에 국교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호, 협력관계가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 및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데 대하여 북한이 극도로 불만해 하고 강력히 반발하기는 하였으나 러시아와 북한간 그리고 중국과 북한간의 기존 동맹, 우호, 협력관계는 상당히 변질된 성격으로나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일과 북한간의 접근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수교로 한국과 대만간의 국교가 단절되고 양국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중국과 대만은 통일 문제에 관하여 여전히 근본적인 이견과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각종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축이 유럽에서처럼 실질적이고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도 강대국들간의 군축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0년대에 이미 중국과 소련이 병력의 감축을 추진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양국이 국경지대에서의 군사력의 감축에 합의하였다. 미국 역시 1990년 4월에 미국과 소련은 INF 폐기협정을 체결하였고, 1991년 7월에는 양국이 START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2년 6월에는 전략무기의 추가감축에 합의하였다. 1991년 9월에 미국은 해외에 배치되어 있는 지상 및 해상 전술 핵무기를 모두 본토로 철수하든가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러시아도 단거리 핵무기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이와같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 자유공산 양진영체제의 와해, 군비축소, 대립하던 국가들간의 화해, 공존,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 등을 의미하는 동.서 냉전의 종식현상이 여러 면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비롯하여 이 지역에서는 유럽에서와 같은 냉전의 확실한 종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들이 다음과 같이 여럿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공산체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있고 특히 공산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78년 이후 4개 근대화정책을 제시하고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혁명노선을 포

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四個堅持”를 선언하고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공산당 1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四個堅持”는 사회주의의 길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견지, 공산당의 영도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의 견지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에는 아직도 냉전기의 대립관계 내지 적대관계가 여럿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간에는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단절, 불신, 적대관계가 아직까지 거의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역시 근래에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북방 4개도서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간의 대립도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양국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고 협력관계의 발전도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국교를 정상화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긴밀히 발전시키고 있지만 센카쿠열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양국간의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들간의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간의 국경분쟁 역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셋째,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군축보다 군비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아시아국가들의 재래식 무기 구입량은 세계 전체의 35%를 차지하였고(중동국가들은 22%), 세계 군사비에서 차지하는 아시아국가들의 국방비가 1980년대 초에는 15%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25%나 되었다. 1990년대에도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는 연 14% - 20%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한 질적 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어 있다.

넷째, 유럽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활성화, 북대서양협력위원회(NACC) 및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의 창설 등을 통하여 동.서유럽국가들이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多者間安保協力體 혹은 多者間安보協議體의 창설 등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략 이상과 같이 1980년대 말 이후 동북아시아에서도 냉전체제의 변질 내지 종식현상이 여러 측면에서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에서처럼 냉전이 종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2.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

개인이나 국가나 일반적으로 긴장이나 더욱이 전쟁보다 안정과 평화를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우리 국민과 민족은 다른 어느 국민이나 민족보다 긴장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정과 평화를 회복, 유지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5천년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 무수한 외침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50년대 초에 3년여의 전쟁으로 전민족이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었으며 5백여만의 민족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전국토가 거의 초토화될만큼 물질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겪고도 전쟁이 종식되고 안정과 평화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한반도가 동서 양진영간의 치열한 각축장이 됨으로써 국토와 민족의 분단은 더욱 확고해졌고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고 어렵고 복잡해졌다. 아직도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3년여의 한국전쟁의 비참한 체험이 우리 국민과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의 억제와 안정과 평화의 회복 및 유지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이를 위하여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이미 4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공산권의 붕괴와 동서 냉전의 종식으로 반세기동안 상호 치열히 경쟁하고 대결하던 동서 양진영의 국가들이 화해하고 공존, 협력관계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는데도 한반도만이 냉전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재발의 위협이 여전히 심각히 의식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우리 민족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와 손실은 1950년대 한국전쟁시의 것과는 비교되기 어려울만큼 훨씬 크고 많을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장비와 무기의 양과 질은 6.25 당시보다 훨씬 많고 우수하며 인구는 2배 이상이고 재산도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로 우리 민족이 민족의 항구적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기약, 보장해 줄 수 있는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의 억제와 평화정착을 희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셋째,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와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토와 민족의 양분과 쌍방간의 적대적 대치로 인한 불안과 고통 및 희생과 부

담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족이 항구적 안전과 자유 및 번영을 기약,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러한 목적이 충족될 수 있는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 및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공산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체제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의 방지와 평화정착은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고 단계이다. 우리 국민이 평화통일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도 전쟁재발의 방지와 평화정착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1980년대 말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내외상황과 여건이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현저히 증대시키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즉, 공산권의 붕괴와 동서 냉전의 종식,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구공산국가들과 한국간의 국교정상화와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지각변동으로 표현되는 국제관계의 혁명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한 독일과 예멘의 통일, 남북한간의 현격한 국력의 격차 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도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정착과 남북한간의 합의와 협조를 통한 평화통일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섯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와 주변국가들과의 상호관계 등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문제 그리고 통일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평화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그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필수적~~ 필수적 요소이다.

대략 이상과 같은 배경과 이유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의 방지와 평화의 정착을 무엇보다도 희망하고 있고 또한 최우선적인 국가목표와 국가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공산권의 붕괴와 동서 냉전의 종식,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구공산국가들과 한국간의 관계발전은 우리의 이러한 국가목표와 국가정책에 극히 유리한 국제적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과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의 방지와 평화정착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항구적 안전과 자유 및 번영을 기약, 보장하기 위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의 과제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과제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우리의 올바른 정책과 노력 그리고 주변국가들의 동조와 협력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호응과 동조는 더욱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3.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의 개념

평화의 개념은 아주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학자들마다 상당히 다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되고 있다. 소극적 평화는 국가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멸망 내지 약화시키려는 악의가 부재하는 상태, 혹은 전쟁요인이 제거되고 이해관계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수립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간의 전쟁이 전통적 의미의 전쟁 뿐만 아니라 내란, 간접침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인 의미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처해 있는 내외상황과 여건, 이들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내외정책과 이들 국가들간의 상호관계 등으로 보아 현재 및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주변국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문제는 남북한간의 평화정착문제가 관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의 개념은 남북간에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비정규전이나 간접침략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도도 없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간에 평화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쌍방간에 무력침략과 무력침략의 위협이 해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정부의 전복과 상대방 지역에서의 내란, 폭동, 혁명, 테업 등을 위한 무장 및 비무장 요원의 침투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교사, 선동하는 행위 등이 완전히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4. 남북한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제도적 장치의 문제이기보다 한국과 북한의 의지의 문제, 특히 한국과 북한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및 “국가정책”의 조화와 일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국과 북한이 쌍방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정착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평화적 민주적 단계적 방법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최대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와 국가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공산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최대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와 국가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이 평화문제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한국의 “先 平和定着 後 自由民主統一” 정책과 북한의 “先 共產化統一 後 平和定着” 정책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남북한간의 평화정착문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 역시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하나의 필수조건임은 물론이다. 한국과 북한의 의지와 이익과 정책의 조화와 일치를 기반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그 장치는 가장 안정되고 실효성있는 것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한은 평화정착을 위한 의지의 일치와 정책의 조정 및 타협을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은 무엇보다 쌍방간의 평화공존에 관한 합의를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초보적인 전제는 쌍방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한 무력행사나 무력사용위협을 행사 및 상대방을 전복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관한 합의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관하여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합의하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면 합의서는 남북간의 불가침협정이란 평화협정과 같은 효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새로운 합의나 협정을 필요로 하고 원한다면 새로운 협정의 명칭과 형식은 불가침협정, 평화협정, 1972년 1월에 체결되었던 “동서독 기본조약”과 유사한 남북한 기본관계협정, 혹은 남북평화공동선언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협정의 명칭과 형식이 어떤 것이 되든 협정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을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한 간의 경계선으로 한다.
-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한다.
-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사용의 위협을 행사하지 않는다.
-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 쌍방간의 대립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UN 헌장을 준수한다.
- 남북간의 협정이 한국과 북한이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통일은 무력 아닌 평화적 민주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 남북간 협정에 대한 국제보장문제, 비무장지대에 평화감시군 주둔문제, 남북간의 군비경쟁중지와 군축문제, 한국 정전협정의 대체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보장방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와 주변국가들간의 불가분의 역사적 관계, 한반도에서의 주변국가들의 긴요한 이해관계 등으로 보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문제는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주변국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으로 남북한과 미.중 4개국 협정, 남북한과 미.일.중.러시아 6개국 협정, 남북한과 주변 4개국 및 한국전 참전국가들간의 협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은 실현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특히 실효성이 극히 의문스럽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보장방안으로는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간 협정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것으로 본다. 남북한간 협정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 미.중 양국간 협정으로 보장
- 미.일.중.러시아 4개국간 협정으로 보장

■ 주변 4개국간 협정과 UN 안정보장이사회가 결의안으로 보장

이상의 방안 가운데 주변 4개국이 남북한간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또한 4개국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UN 안보리가 남북간 협정을 추인하고 이행을 보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비무장지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국제감시단을 주둔시키는 것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하나의 유효한 국제보장방안일 것이다. 국제감시단은 UN 평화감시군이나 남북한이 합의하는 국가들의 군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개국들의 교차승인, 남북한과 주변 4개국들간의 불가침협정의 체결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보장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형성된다면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남북한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간의 상호관계로 보아 이러한 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상당한 기간동안 극히 희박하다.

ao 동북아 경제
 상선관라 조지 3 나라서
 2003년 이후에 100만 원
 전국적인 mch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최규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목 차

들어가며

1. 평화협정의 제기배경
2. 평화협정과 동북아정세
3. 평화협정의 내용
4.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5. 결론

들어가며

1945년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세계냉전과 민족분단의 역사가 50년 세월을 거듭하여 95년에 이르렀다. 이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역사는 참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토록 강고하던 냉전은 이미 해소되었고 전범국으로서 인류의 단죄를 받아왔던 독일은 민족재통합을 이루고 21세기로 재도약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민통치와 전쟁발발에 대한 반성도 없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을 모색하며 정치,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인류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은 여전히 휴전과 분단체제하에서 인고의 세월을 감내하고 있다. 이 50년 동안 우리 민족은 군사적 긴장으로 끊임없이 생존 자체를 위협당해 왔으며 이로 인해 남북의 정치현실은 파행을 거듭하였고, 민족의 자주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백 86만 명의 대치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군사대결을 하고 있으며(통일당시 동서독군은 모두 합쳐 66만 8천명이었다.) 남한 120억달러, 북한 약 30억달러라는 초유의 군사비는 남북경제와 민족구성원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더욱이나 냉전이 해소된 세계는 이념보다는

자국의 경제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국력을 쏟고 있는 이때, 남과 북이 지금의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지 못하다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멸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냉전해소와 신질서구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실질적인 휴전과 군사적 대치의 당사자였던 북한과 미국은 지난 94년 10월 21일 북미합의이후 경수로 건설에 관한 구체적 회담을 진행한 결과 결국 6월13일 쿠알라룸푸르 회담에서 완전 타결 짓고 2001년까지 북에 경수로 건설을 완성하고 7월까지 북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북미간 북일간 외교정상화가 멀지 않았음을 뜻하고 북미간의 그 동안 적대관계가 경제적 협력관계로 전환해가며 군사적으로는 평화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모색은 휴전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평화체제구축을 제의한 바 있으며, 미국도 내부적으로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현실적인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또한 리펑 총리의 '한반도평화체제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자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 동안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실추되었던 러시아도 남북에 등거리정책을 구사하며, 핵문제 8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신질서수립에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정치,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 또한 조일 수교를 추진하는 등 동북아 냉전질서 해소와 새질서 수립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변화의 정점에 위치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체제구축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민족주체의 노력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평화체제논의를 둘러싸고 여전히 주변강국의 이해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북.미, 남.북간의 관계개선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체제로 가는 국제질서의 흐름을 활용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구성원의 총의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휴전체제의 종식으로부터 출발하고 평화협정의 내용에 의해 앞으로의 방향이 크게 규정받을 것이기에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평화협정의 내용, 당사국에 관한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1. 평화협정의 제기배경

1) 정전협정으로는 한반도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휴전협정은 교전당사자가 일정기간, 장소에서 전쟁행위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쟁의 완전한 중단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휴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전대상자의 일방적인 무력행사나 선전포고에 의한 적대행위의 재개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런 까닭에 53년 7월 27일 체결한 휴전협정에는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의 소집을 명시하여 이 회담을 통해 휴전의 종료와 평화의 보장을 이루려 하였던 것이다.

2) 정전협정의 내용은 이미 사문화 되었다.

원래 정전협정에도 전쟁역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안전핀은 마련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정전협정 2조 13항 - KOREA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 1: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3조 43항 - 중립국의 시찰소조가 남북한 5개 지역에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4조 60항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당사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발효한 후 3개월 이내에 각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것이 바로 이 안전핀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57년 6월 21일 “한국에 근대병기를 들여오고 군사원조, 한국군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58년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무제한적인 군비확산의 길을 걷게 됨에 따라, 그리고 조약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외군이 철수해야 됨에도 한 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주둔을 영구화시켰고 이와 더불어 1954년 5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철수로 제네바 정치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이 안전장치는 자기의 기능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하고 군사정전위회의는 서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항의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3) 정전협정의 이행기구는 사실상 해소되었다.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이 94년 4월 28일과 9월 1일을 기해 완전 철수함으로써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군사정전위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미측 스웨덴, 스위스와 북, 중국측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되었던 중립국감시위원회는 91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열되어 중감위에서 이탈하고 95년 3월 폴란드마저 이 기구에서 물러남에 따라 정전협정의 이행을 담보하고 감시할 기구가 사실상 해소되어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정전협정은 새로운 형태로 대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94년 12월 미군헬기 격추와 보비 홀 준위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북한과 미국의 정치협상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한 것으로 더 이상 이 기구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음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북과 미국은 장성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었으나 김정권의 반대로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다.

4) 북한의 유엔가입과 북미관계개선은 더 이상 정전협정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담한 측의 조약서명자는 남한이 아니라 UN군사령부였다. 그런데 ①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이 사령부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UN사령부는 유엔이 북한을 평화의 파괴자로 낙인찍고 한국에 파견되었다. 따라서 UN신입 가입국 자격인 평화애호국(헌장 4조 1항)조항에 따라 북한에 대한 평화파괴자 적용이 철회되어 유엔사령부는 해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UN사를 해체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93년 12월 24일 북한을 방문한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한말은 이의 단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②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더 이상 정전협정이 존립될 필요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평화협정과 동북아 정세

평화협정 논의를 규정하는 것은 크게 보아 북미관계개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신아태전략, 남한과 주변국의 의도 등이 되겠다.

지난 6월13일 북미간의 완전 핵타결 후 진행되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조미수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북미관계정상화는 필연적으로 상호간을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휴전협정 및 휴전체제의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대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북,미 핵합의 이후로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92년 1월 북한의 김용순과 미국의 아놀드 켄터 당시 동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간의 북미간 최초의 고위급회담 이후로 지속된 북미의 접촉 속에서 북미간의 평화보장체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74년부터 미국을 당사자로 시종일관 휴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해

왔고 핵합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최대위협요소로 미국의 군사위협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에 맞서기 위한 군사비지출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까닭에 북미 관계개선의 핵심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관계진전이 되는 현재의 기회에 이 사안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해서 평화협정체결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핵합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4월부터 체계적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해 왔으며 평화협정체결의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미국은 최근에도 공식적으로는 휴전체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헬기사건의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북한과 직접 접촉했던 점이나 94년말 미국무성이 “한국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던 점, 그리고 지난해 12월초 미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가능성’ 보고서 등으로 볼 때 표면적인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가는 상황변화에 따른 저울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현 상황변화의 다른 하나의 규정요소는 올 2월 말 미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신아태전략(EASR)이다. 신아태전략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에는 ‘1)주한미군(3만 7천)을 포함한 10만명규모 아시아주둔 미군의 현상태 유지와 지역 안보체제 강화 2)대북 지상군 주력은 한국군, 미국과 일본은 전략 해·공군과 정보수집을 주로 담당 3)한미방위동맹 유지 4)남북평화협정 체결 5)한국에 국방비분담 증액과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구’ 등이 있다. 금번 미국의 전략은 부시 행정부 이래로 줄곧 강조되어온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더욱 강조한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지위와 적극적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치철학을 반영-특히 금번 전략의 입안자인 조셉나이 미 국방차관보의 정치철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미국의 힘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하고 있다. 신전략은 이러한 미국의 의지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이다. 그러므로 신전략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개입과 과거 비우호국 및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하는 확대전략을 병행구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입과 확대를 통하여 향후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전세계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이 담당했던 역할을 수행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신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93년 미국과 아태지역의 교역량이 3천7백40억 달러이며 미국민 2천8백만의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과 확대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신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면 첫째 신전략은 주한미

군의 감축계획(년·위너 수정안에 따른)을 전면 폐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한국방어에서 주도적 위치에서 보조적·지원적 위치로, 한국방위보다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특히 EASI 2(92년에 발표된)의 주한미군 감축계획 3단계(1996-2000)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의 궁극적 목표로-물론 북한의 위협정도, 한국의 억제력 수준같은 상황에 따른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설정했었는데 신전략에 의한 수정으로 불투명하게 되었다. 또한 신전략은 위 2)의 군 체제에서처럼 한국군을 한미일 연합군 체제에 보다 깊숙이 편입시켜 미국의 군수이익을 보장해줄 뿐아니라 지상군 중심의 편중된 운용으로 한국군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신전략은 확대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후로 과거, 동북아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설정했던 북한의 공세적 전략, 미사일·핵개발 등의 문제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재래식 군사력의 군축문제를 현실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전략에서 남북평화협정체결과 지상군을 한국 주도로 재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북미관계 개선과 신전략에서 드러난 미국의 구도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구축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동북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확대리는 보다 크고 중요한 목표에 복속되는 하나의 사안 정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문제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요구나 의사에 합치되는 양상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남한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미국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북에 대한 압박과 대화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평화협정문제에 대해서도 당분간 동일한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는 평화협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나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평화체제논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 할 것이고 미군문제를 평협체결 과정에서 부차화시킴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리펑 중국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서 남북한이 주체가 되

야 하고 중국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평화체제구축에 소극적인 한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중국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려면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본과 러시아의 견제라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앞으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구사하고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획득한 외교적 성과를 가시화해 당사자로 참여하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외교의 총적 목표는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 군사대국화이다. 이는 두 가지 정책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며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확대이다. 이를 위해 북일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력의 절대감축이 아닌 현상유지적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려는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6자안보포럼 등을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추진과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외무장관 코지레프의 '러시아는 한 개의 눈만이 아니라 두 개의 눈을 아시아로 돌려야 한다'는 발언에서 보이듯 적극적인 동북아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친한정책으로 이 지역의 재편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 8자회담을 제안하고 북한과의 소원해진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고 제기할 자격도 없는 바 다자간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남북한 동시외교와 평화체제에 대한 추진을 통해 영향력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러 국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3. 평화협정의 내용

평화조약(협정)의 내용은 일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나 통상 일반조항으로 적대행위의 종료, 점령군의 철수, 압류재산의 반환, 포로의 송환, 조약의 부활 등이 있고 특수조항으로 손상의 배상, 영토의 할양, 요새의 파악, 전쟁전범자 처벌 등이 포함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런 상례에 근거해 볼 때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크게 ① 적극적이고 완전한 평화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호간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과 한반도에 집중된 비현실적인 병력 및 무기의 감축, 도입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군축에 관한 내용, ②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실현에 관한 내용, ③ 한국전쟁의 주요당사자이면서 유일하

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변화 및 철수에 관한 내용, ④ 남북관계의 성격규정과 통일문제에 대한 담보의 내용, ⑤ 평화협정체결에 따라 남북이 체결하고 있는 각종 군사조약의 평화협정에 기초한 조정과 폐지에 관한 내용, ⑥ 이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 및 그 실행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져야 하며 기타 부속적인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

전쟁전범자 처벌이나 영토의 문제 등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특수성상 소모적인 논란을 초래하여 평화협정체결 자체를 요원하게 할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과 군비축소

- a) 적대적인 군사행위를 완전중단한다.
- b) 휴전선에 배치된 군사무력을 후방으로 철수한다.
- c) 군병력이 통상 전체인구의 절반으로 설정됨으로 남북각각은 30만으로 감축한다.
- d) 동수감축이 아닌 절대감축을 실행한다.
- e) 인원의 감축만이 아닌 군비의 상호균형과 절대감축을 실현한다.

② 한반도에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 a) 비핵화선언에 근거해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고, 이를 확인한다.
- b) 핵무기의 제조, 반입, 저장, 운반을 전면 금지한다.

③ 국제연합군사령부는 해소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a)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현 유엔군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철수해야 한다.
- ☞ 1975년 제 30차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해소와 주한미군 철수가 결의된 바 있다.
- b)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북한과의 적대행위가 만료되고 남북이 평화를 보장하는 군축을 실행하는 것에 따라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c)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남북이 군축하는 것에 비례해서 실시되며 완료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완성한다.
- d) 한미연합사는 남한의 군작전지휘권을 완전반환해야 한다.

④ 특수한 남북관계규정과 통일의 보장이 담겨야 한다.

- a) 교전단체였던 북한이 유엔에 이미 91년에 가입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가로써 인정된다.
- b) 남북은 합의서에 언명한대로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한다.
- c) 유엔과 미국(주변국)은 이를 지지한다.

⑤ 남북상호간에 체결한 군사동맹은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재편한다. 한-미간, 조-중간에 체결된 군사조약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 자동개입조항등을 변경한다.

- ⑥ 위의 조항을 이행할 조직을 구성한다.
 - a) 평화협정체결의 당사국으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한다.
 - b) 위 평화위원회에서 위 조항을 이행한다.
 - c) 위 평화위원회는 평화협정체결이행을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
 - d) 평화협정이 완전이행되는 시점에서 위 위원회는 해소한다.
 - e) 위 평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감시를 위한 중립국평화위원회를 구성한다.

- ⑦ 기타
 - a) 인도적인 조치로 50년 전쟁당시의 포로송환과 미군유해의 완전송환을 확인한다.
 - b) 평화협정 이행임무를 위배하는 것에 대한 강제적 사법처리 조항을 설정한다.

4.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1) 남북한의 쟁점사항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정세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체결 당사자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우선 남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를 놓고 보이고 있는 견해차이를 8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의 대화를 통해 살펴본다.

“<남> 현재의 불안한 휴전체제를 하루속히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교전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 또 앞으로 이 땅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를 감축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당사자이다.

<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조.미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다. 우리 북.남 관계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면 된다.

<남> 남북쌍방은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해야 할 주인이며, 귀족도 과거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제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북> 정전협정 서문에 본 군사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의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을 타방으로 체결됐다. 그쪽은 실제상으로 정전협정 체결을 반대했다. 마지막 회담장에도 안나왔다. 그 휴전협정을 국회에서 무효화 결의를 채택했다.

<남>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틀림없다. 그러나 휴전협정 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53년 6월19일 조선인민군 사령관과 중국의용군 총사령관이 유엔군 총사령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남측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7월12일 한국정부가 정전협정 이행약속을 공포했다.

<북> 남한의 주인이 남측이라는 것. 그렇게 당당한 주인이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데 군사적 문제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군권문제라든가, 핵무기 발사권한 문제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대답해 달라.

<남> 한국전쟁이 왜 발발했느냐. 어떤 누구누구 사이에 싸웠느냐. 이런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휴전협정 이후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군대가 누구인가. 남북한 군대다. 평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도 남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수체로서 정전문제를 평화문제로 바꾸는 협의를 해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면 문제해결이 하나도 안된다.”

이러한 대화를 살펴볼 때 남북한 사이의 대립은 남한정부의 당사자자격 유무이다. ‘휴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체결 능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북-미 당사자, 남한은 남-북 당사자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2) 평화협정 당사자에 대한 북한의 주장

북한은 62년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남북한 공격불행사에 대한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63년 9월에는 공화국 창건 15주년 기념보고를 통해 미군철수의 조건 아래 남북이 서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72년 1월 김일성주석은 “우리는 남북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평화협정체결 후 미군철수의 입장을 밝혔다.

74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는 조미평화협정을 주장한다. 이 회의

에서 허담은 “북과 남 사이의 대화의 전 과정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긴장 상태를 가지고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도대체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데 대하여 호상합의한 지 만 2년이 가까워지는 오늘날에도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의 지배 밑에 놓여 있고 일본군국주의 재침의 활무대로 되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사실은 그것을 논의할 여지 없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아무리 논의하여도 의의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조건 아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실히 보장할 만한 실천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옹당합니다”고 보고했다.

평화협정이 남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법률적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아무 실권도 못 가진 식민지 고용병들과 마주 앉을 수 없다(95.3.9)”고 지적하면서 남한 배제입장을 강력히 드러냈다.

3) 북한의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박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의 논리를 수정없이 그대로 기술한다).

첫째, 정전협정 서명당사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조약의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함으로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는 ‘법인’인 UN(헌장 제104조) 자체이며, UN의 ‘기관’인 UN군사령부나 그 ‘담당자’인 사령관은 될 수 없다. 그리고 협정의 서명자는 UN군사령관이지 미국대표가 아니다. 북한은 ‘UN군사령부를 대표한 미합중국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의 법리를 오해 또는 혼동한데 지나지 않는다.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는 자신을 임명한 정부나 국가의 이름을 현명하고 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정 서명자인 마크 W. 클라크 미육군대장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라고 서명함으로써 UN의 대표임을 현명하였을 뿐, 미합중국의 대표로 서명한 바는 없다.

둘째, 한국은 UN군 성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은 직접 UN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UN군에 작전지휘권 이양공한(50.7.15)을 통해 UN군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참여, 그 효력을 준수, 이행하고 있는 실질적 전쟁당사자이다. 이양된 작전지휘권 속에는 정전협정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미평화협정 요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미국이 협정의 서명자라는 주장은 ‘대표’의 법리에 명백히 모순될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정전협정 서명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제관례상 북한주장의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 정전협정은 그 전문에 “이 조약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 UN군사령관의 협정 체결권이 군사적 사항에 한정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교전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로, 정치적 조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이 UN총회 결의(53.8.28)에 따라 제네바에서 열린 평화회의(54.4)에 참석한 것도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의도에 대한 남한정부의 견해

국제법상의 법리나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지난 73년까지 한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하다가 그후 대미평화협정 요구로 전환한 데서도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3년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베트남전 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을 체결, 미군을 철수시킨 데 고무, 그 이듬해인 74년 미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대미평화협정을 제의(3.25)하게 된 것이다. 즉 북한은 베트남의 사례에 고무 받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남한정부의 분석이다.

다섯째, 군사정전위 수석위원의 교체에 대한 북한의 반박에 대하여

노동신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정전위 수석위원을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으로 교체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정전협정에 의하면 “쌍방 수석대표는 우리(북)와 미국 측에서 나오게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평양방송). 정전협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협정 제17조는 협정의 준수와 집행책임이 협정서명자(UN군사령관)와 그 후임 사령관에 속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UN군사령관은 군사정전위 우리측 대표를 임명한 것이다.

여섯째, 정전협정과 제네바 회담에서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하였다.

한국이 ‘반공포로’석방을 단행(51년)했을 때 공산군측은 UN군사령부(UNC)는 물론, 한국과 그 군대도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또 그후 계속 개척되어 온 군사정전위에서도 한국 측이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남조선 전을 일삼아 왔다. 이는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을 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로 인정해 온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협정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협정준수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제60조)에 따라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정치회담을 결의(53.8.28)한 바 있는 UN은 이 회담 참가자를 지정, 이에 따라 한국은 제네바 평화회의(54.4)에 참석한다.

4) 최근 남북한의 입장 변화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현행 정전협정으로부터 평화협정의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방북단이 95.2.25일 밝혔다. 방북단은 95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당 및 정부 고위인사들과 면담하였고, 단장은 김영진 교수(조지워싱턴대 교수·동아연구소장)이다.

김교수는 "북한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북미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의 핵심요인들은 현시점에서 평화협정이 불가능할 경우 '중간적인 조치'를 검토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측은 그러나 그 '중간적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자리에서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교수는 말했다.

남한정부 역시 평화협정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평화협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입장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북한 직접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격확인 및 협상이 필요하고 국내법의 정비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 유엔 내에 남북한간 '남북한 협력위원회'를 구성, 상호협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이다.

둘째, 휴전당사자(한국·북한·미국·중국) 4자회담(2+2)으로 평화보장 관련회의를 가지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최근 방한한 이붕 중국 총리의 "남북한을 포함한 관계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발언과 끝이어나온 한 외무부장관의 "선 남북 평화협정 후 미중확인"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방안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의 비무장지대 국제적 감시, 군축 등이 논의되어야 하며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체결한 동맹조약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까지 담겨 있다.

셋째, 남북한이 각 분야(군축 3통협정, 교육문화협정 등)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이는 평화협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들 방안 가운데 외무부는 두번째 방안인 2+2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변 강대국들의 다자논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남조선 괴뢰를 비롯한 일부세력들이 다자회담을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우리 제의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94.11.22)"고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을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다자회담'을 거론하는 '일부세력'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 또는 러시아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관측된다.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안전보장을 위해 남북한과 미·중·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6자 안보협의체 구성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러시아 역시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그 동안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제의(94.3)한 바 있는 남북한 등 '8자회담'을 다시 거론했다. 러시아는 이같은 회담은 "북태평양지역과 나아가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를 확립하는 토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일본과 러시아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하는 것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 북한은 일부 나라들이 '다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조선문제에 개입하여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라들이 개입한다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의 앞길에는 복잡성만 조성될 뿐이다"고 보면서 강하게 반대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다자간 안보대화기구 논의에 대응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쌍무적 군사조약 폐기, 역내 외국군 및 기지철거 등 4개항의 선결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93.3.13).

한편 갈리 유엔 유엔사무총장은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방북(93.12.24~26)중 베풀어준 호의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정전협정을 영원한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당신(김일성)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중앙방송이 94.1.16일 보도했다.

6) 미국과 남북한에 의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남측 당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남북쌍방 당국은 현재 한반도의 남북 양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 당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미국이 평화협정을 보장할 실질적인 실천력

을 가진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는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화협정은 내용상 전쟁상태로 점철된 과거의 적대적 관계의 법적, 제도적 청산과 동시에 평화협정에서 규정하는 제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행문제까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평화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휴전협정체결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달라진 국제환경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띤 문제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일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문제에 실질적인 정치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관련국은 미국과 남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의 참전과 휴전당사자이고, 아직까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협정의 당연한 당사자이다. 이것은 당사자 문제의 초점이 남한의 당사자 자격 유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참가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논의들이 대부분 남한정부의 당사자 자격에 대한 시비였다. 이러한 논의는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있으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북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없으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은연중에 남한정부가 당사자 자격이 있으면 미국은 불참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든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미국의 당사자 문제이다. 미국이 명백한 당사자이므로 미국이 참가한 상태에서 남한이나 중국의 자격여부를 논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중국인민군을 1957년에 이미 철수하였고, 그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을 당사자로 참가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뿐이고,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 등 주변국까지의 개입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남한은 65만의 병력을 가지고 북한과 대치해왔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중요한 담보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은 지금까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아직도 평시작전통제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을 약속하였으므로 남북한의 관계는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불가침과 군축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

인들이 남한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 유무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불가침과 군축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남한정부가 군사적 대결의 한 주체임을 상호인정한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를 종식시키지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상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은 결국 미국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5. 결 론

1)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의 분명한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현재의 휴전체제는 언제든지 전쟁의 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불안정한 체제이고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심화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북미관계개선의 추세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휴전협정은 즉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미국은 휴전체제를 존속시키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의 분명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시켜온 대결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평화협정을 통해 매듭지어져야 한다. 미국 측이 현재 표방하고 있는 자신을 제외하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① 미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실질적인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제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②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간에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군축을 실현하는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 월등한 정보통신력에 기반한 미국의 해공군력, 한국군의 군현대화(병력감축과 군사력의 질적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북한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요원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2) 한국정부는 군작전권의 완전회복으로 지주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와 정책대안을 마련

하여 이를 근거로 평화협정체결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은 그 누구도 아닌 남북 북이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조건에서 평화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전략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또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문화되고 있는 정전협정체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미,일에 예속적이고, 한반도 평화보장에 역행하며, 한국군의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미국의 신아태전략(EASR)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부당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나 한반도에의 공격형 무기의 증강과 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이 되어도 상당기간 현 수준의 주한 미군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정책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이익과 무관하지 않는데도 방위비 분담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한미군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땅과 시설들에 대한 주둔비를 지불하기는 고사하고, 주둔비용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한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최근 신문에도 보도되었듯이 한반도의 평화협정문제가 거론되는 이때 주한미군에 공격용 무기의 추가도입과 증액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데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은 옹당히 재조정되고, 궁극적으로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 증액요구와 무기반입을 중단해야 한다.

4) 한반도 분단과 휴전체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국들은 우리 민족의 평화실현의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 그리고 휴전체제가 장기화된 과정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국들은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사를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국들이 평화협정체결과 그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적극 지지하고 보장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실현의 첩경이며 우리 민족에 대한 옹당한 책임이기도 하다.

평화군축의 내용과 실현 방도

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목 차

1.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과 군축
2. 우리나라 방위비의 규모와 방위비삭감의 필요성
3. 왜 방위비는 늘어나고 있는가? - 방위비 확장의 논리와 그 허구성
4. 평화군축을 이루기 위한 방안

1. 탈냉전 시대의 안보개념과 군축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세계는 냉전적 군사대결 구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경제질서적측면에서 보면 냉전체제 속에서 형성되어진 군비우선적 경제질서가 민간경제우선적 경제 질서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안보를 위협하는 원인도 군사적 영역으로 부터 정치, 사회, 경제, 환경과괴동 비군사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높히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들어 유엔 주최로 열고 있는 일련의 국제회의들 즉 1992년도 리우 환경회의, 1993년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성의 사회개발정상회의, 1995년 8월 베이징에서의 세계여성대회 등에서의 주요한 관심사가 '어떻게 친환경적인 개발을 이룰 것인가', '제3세계,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자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발전에 통합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평화'라는것이 단순히 '전쟁하지 않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며 군사적 안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안보'가 평화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제 3세계의 종속적 관계를 다소 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제 3세계 국내에서도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하는 명분을 약화시켰고 민간정부들이 선거에의해 집권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민간정부가 집권하고, 지방자치등의 민주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북으로 부터의 남침 위협'이라는 안보논리 때문에 자유와 복지를 양보하고 지냈던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 거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92년부터 사회운동 특히 여성단체들이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고 방위비 삭감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여성연대는 매년 국회와 국방부 앞으로 방위비를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내고 그 당위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들, 아동들,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중 복지비를 늘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방위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복지분야는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평화보장과 신뢰구축이 될 수 있는 군축으로 부터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을 도입하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과 국민들의 요구와는 상반되게 최근 몇년 간은 해마다 방위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탈냉전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정책은 냉전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방위비 문제나 군축이 언제까지나 군부의 독점물이 되어서 배일에 가려질 수는 없을 것이다. 방위비 삭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차 커질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민족이 중심이 되는 안보정책을 새로이 마련해야 하며, 안보문제와 군축문제를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방위비의 규모와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

먼저 흔히 '국방비'와 '방위비'가 혼동되게 사용되고 있어서 '방위비'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상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방위비'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것은 국방부 소관의 국방비와 내무부 소관의 '전투경찰 및 해양경찰비'와 그밖의 '병무행정비'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방위비가 국방비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위비 액수는 어느 정도일가? 95년도 현재 방위비는 정부 예산의 22.1%를 차지하는 11조 744억원이며, 복지예산 규모는 6.38%이

다. 방위비 지출증대는 단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발전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말하자면 떡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한 부분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부분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방위비 지출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희생은 막심하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스위스(63%), 독일(47%)와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태국(10.4%), 방글라데시(1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 가정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집안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자가 발생하든지, 장애인이 있다든지 이 모든 것이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 교육 부담 역시 개별가정의 몫이며, 무보수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의해 이 부담들이 사회적 문제로 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성격이 급하고 관용이 부족한 것은 모두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의 안보(안전한 삶의 질)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피할수 없는 책임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능력이 있는 중산층 가족들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빈곤층들의 삶은 더욱 불안한 형편이다.

남한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이다. 또한 복지제도의 시행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세계 122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이고 무기 수입량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무기량은 세계 최고인데 내년도 미국 군장비 수입은 18억 2백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기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이 비싸다. 예를 들면 F-16 한대가 334억원이다. 그리고 올해 말에 수입할 것으로 알려진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한대당 249억원 수준이다. 1400억원하는 잠수함도 있다.

중앙대 사회복지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남한의 방위비를 중상위 자본주의 국가 수준인 7.4%로 감축할 경우 약 4조 8천억원 정도의 경제잉여가 발생하여 이 돈으로 전국민의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완전 무상의료, 103만명의 무주택 문제 해결,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실시, 약 92만명 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장애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략적인 예산이 확보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 남북의 대결구조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외면한채 지금까지 희생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3. 왜 방위비는 늘어나고 있는가? - 방위비 확장의 논리와 그 허구성

1) 북한은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으며 아직 남한은 군사력에서 열세라는 주장에 대해

① 군사태세의 평가

과연 북한이 남침야욕을 갖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가는 우리로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남한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군축제의를 해왔다. 특히 88년 11월에 발표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보장 정책에 대하여'에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군축안을 제시하고 있고 1차 고위급 회담에서도 군사훈련 금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3-4단계 병력 감축안을 제시했다. 오히려 남한 당국은 대북제의에 있어서 교류에 치중하고 군축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가 1992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유류부족으로 대규모 연례기동훈련을 지휘관 중심의 비기동 훈련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인민군 자체내 해,공군 합동훈련과 공군 및 지상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해상훈련의 경우 82년 부터 91년 까지 약 10년 평균대비 78%가 감소했고, 공군훈련은 7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82년 부터 91년까지 10년 평균 대비 64%가 감소했다. 특히 소련의 붕괴와 한소수교등 급격한 정세변화로 90년 이후 조소연합 해상기동훈련들이 전면중단되는 등 90년 이후 군사훈련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은 연중 거의 쉬지 않고 군사훈련을 하며 자유세계 최대규모의 훈련이라 자부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롯 포코, 스탠즈등 외국군과 대규모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② 군사력의 비교 평가

남북한의 군사력은 대체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 하다고 보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보는 영국전략연구소의 견해가 있으며 국방부만이 열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남한에 비해 병력 약 1.5배, 장비 2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전력이 우세하다고보고있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으나 전력비교 평가에서는 단순 숫자 비교보다는 체계적 비교가 중요하다. 즉 첨단 장비 화되어가는 현대전에서 질적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는 마치 창과 권총을 서로 숫자적으로 비교하듯 무의미하다.

군사력과 관련하여 남한의 열세의 근거로 내세우는 또 하나의 근거는 군사비이다. 즉 남한은 국방비를 GNP의 약 4-6% 정도를 지출했으나 북한은 20-25% 정도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상의 기만으로 10:1되는 남북한 GNP비율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보다 많다. 통일원에서도 91년 4월 발표에서 북한의 해당년도 실질 군사비 추정액은 남한의 48.8%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군사비 비교는 남한의 그것이 북한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은 남침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말이 설득력있게 보인다. 더군다나 전쟁 수행능력의 개념을 단순한 전투력이 아닌 투입가능한 국가적 능력이라고 보았을 때 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실제 첩보위성의 발달로 기습적인 단기 속결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럴 경우 북한의 8배 이상의 경제규모의 동원력이나 민간부문자원의 군용전환능력을 볼때 남한은 절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2)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중국 등 주변 아시아의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군비를 증강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탈냉전 시대이후 새롭게 제기된 논리이다. 특히 일본은 거대한 경제 및 기술 능력을 토대로 정치, 군사적 위상을 높혀 나가고 있다. 이미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제3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달성하였고 걸프전쟁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전비 부담국가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간 세력편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320만의 병력을 3년내에 다시 50만 감축하여 질 중심의 군사력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팔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해군력 중심의 군비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긴장하게 되고 무력증강 분위기가 조성되며 남북한 역시 그 분위기에 밀려 들어갈 조짐이 보이는데 아닐까하는 우려를 낳는다. 우리는 군비경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설사 중국이 군비증강을 하고 있더라도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는 비교, 경쟁할 수 없는 상대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비는 현재 남한의 3배로서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을 모두 다 군사비에 털어 넣어도 일본을 따라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의 군사비를 GNP 1% 수준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막 먹기에 따라 이 비율을 조금만 올려도 우리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낼 형편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군사비 지출로서 일본이나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은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무모한 발상이다. 주변 강대국으로 부터 있을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와 공동안보 개념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통일된 사회에서의 민족 방어적인 군전략 문제에 대한 전략을 논의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본다.

3) 주한미군의 분담금이 날로 늘어가고 이 또한 불가피한 방위비 증액의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1993년 현재 우리의 방위비 분담액은 자그마치 30억 7천만 달러로 계상되어 있다. 미국방부가 하원세출이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992년 해외주둔 미군경비 분담율은 한국 78%, 일본 76% 독일 33%로 되어 있어 미군의 방위비 분담율은 일본 보다 높은 세계 최고이다. 더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미군기지와 한미연합공동전략사업의 지원비용등을 합한다면 우리의 주한미군분담금은 훨씬 높은 것이 된다.

그런데 주한미군 분담금 수준이 어떨든 원칙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입장인가 반대로 우리도 필리핀처럼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이제 주한 미군의 역할이 북한에 대한 전쟁역지 보다는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유사시 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기동군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앞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방부 내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설사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외국군이 한반도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분담을 우리가 지금처럼 전적으로 부담하다시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무주권적인 국가' 지위를 규정하고 이는 한미방위조약의 폐기 또는 근본적 개정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상호간의 행위, 협상, 합의 또는 결정에 있어서 독립국가로서,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을 가지고 나서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입장과 노력이 요구된다.

4)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군사비는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의 군사력의 구조는 기술집약형, 자원절약형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사회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군직업주의와 복지수준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기술집약형 군사력과 정예군 구조에 걸맞는 정예인력의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기체제의 량과 질은 병력과 대체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병력규모를 줄이는데 대한 정책발표는 없는 상태에서 군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방위비의 증액을 주장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또한 울곡사업 비리 때문에 수십, 수백억원의 막대한 무기 도입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라도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내의 철저한 감사와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튼 군사력을 정예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병력규모를 지금보다 줄이고 병력 감소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안보정책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그러한 방향에서의 군의 현대화이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군의 정예화, 현대화 정책 역시 군축 정책의 방향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 국가의 군에 대한 남북 합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평화군축을 이루기 위한 방안

1) 북한을 현재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정부 그리고 국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탈냉전 시대가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북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인식과 정책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을 '잠재적인 적' 정도로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하기에 아직도 병력 수준이나 방위비에서 군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북한을 믿을 수 없으며, 북한을 더 믿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방이 먼저 진행될 경우 체제의 위협이 우려된다고 보며 개방과 교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남한의 의도를 조기 흡수통일 의혹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불신 아래에서는 남북관계는 언제나 평행선이거나 긴장관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우선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무조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이 전면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고 없다면, 남북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북한의 군축 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한 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병력의 감소등을 받아들이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스스로 병력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 그리고 탈냉전시대에서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을 '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안보의 개념 역시 불특정한 위협에 대비하는 다각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통합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법정부적 군축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 군의 내부적 반발은 군축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군축(또는 군비통제) 본부가 외무부나 국무부 소관인데 반해 우리는 국방부 산하에 군비통제실이 운영되고 있다. 군축이나 군비통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군 혼자서만 군비통제 문제를 다룬다면 커다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군축문제는 순수한 군사적 영역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 통일,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3) 휴전협정을 끝내고 남북한 미국 3자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확증'을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종식시키고 새롭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만을 상대로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며, 중요한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 회담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통일이후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는 미래군 상을 정립해야 한다.

한반도 군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에는 무엇보다도 통일조국의 군대상과 적정군사력이 수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주변국의 위협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의 규모와 미래군의 모습을 조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축의 기본 지향점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군축의 질박성,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주변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생존할 수 있는 미래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 가야 한다. 이는 곧 남북한 공동안보의 원리에 입각하여 양측이 군축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5) 군사적 투명성과 군에 대한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대는 쿠데타로 집권하여 권위주의 정권을 운영했던 경력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울곡비리 사건등에서 드러나듯이 무기거래를 둘러싸고 막대한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의 안보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군은 과거처럼 철의 장막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과는 정보의 교류의 벽을 쌓고 지냈다면 이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6) 한미방위조약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미국으로부터 작전 지휘권도 회수받아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4대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도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가끔 "미래에는 한국군이 주가 되고 주한미군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안보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의 한미방위체제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구상과 동북아시아 군사전략구조이다. 한미체제는 그 축에 편입된 구조적 일부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국가의 군사적 목표나 요구는 물론 미국세계군전략의 고차적 구조의 일부 중에서도 극히 작은 일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군사정책을 세우더라도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의 지시와 간섭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 하에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자국의 무기를 더 팔기 위해서 군축에 반대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미국으로 부터 군사적 자주권을 돌려 받는 일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 평화군축 시민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평화군축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다. 군비확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무기업자들의 로비와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평화군축으로 막강했던 군의 위력이 감소되는 것을 싫어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군축이 실현되어야 2000년대 통일 조국에서 지금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평화군축 문제는 가장 침체한 정치적 문제로 취급되어 왔고, 대중적으로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금처럼 열악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위비 삭감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군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리라고 본다.

유럽에서의 군축성공이 대대적인 반전반핵운동, 군축운동에 힘입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찬반이 분분한 정치적 문제를 정치가들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평화군축운동이 운동과정의 우선순위에서 사위권으로 오도록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차영구

"남북한 군축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1994년 3월15일 민주당 정책토론회 자료집

임복진

"군축시대, 한국의 과제와 대응방향", 위 자료집

조임숙

"방위비 삭감을 위한 이론적 모색", 1993년 6월 14일 방위비 삭감과 여성 복지를 위한 연대모임 토론회 자료집

▶ 메모 ◀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p>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p>	<p>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1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p>
--	--